

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의자 : 이정연 의원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,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-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를 정비하고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여 징계기준의 객관성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17조제1호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검직 사임권고 미이행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위반,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의무 위반 및 직무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비함(안 제1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)
- 다.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확히 규정함(별표 2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,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으로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함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일부 지방의회의 윤리 관련 조례가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, 징계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.
- 이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여 징계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안 제17조제1호에서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시한 것은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.
- 안 제1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 미이행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위반,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의무 위반 및 직무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별표 2에서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징계양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징계운동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법적 타당성

- 의원의 윤리강령, 윤리실천규범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,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윤리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,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징계사유의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별표 2의 징계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,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준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,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를 명확히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징계기준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